양육비정보시스템 선지급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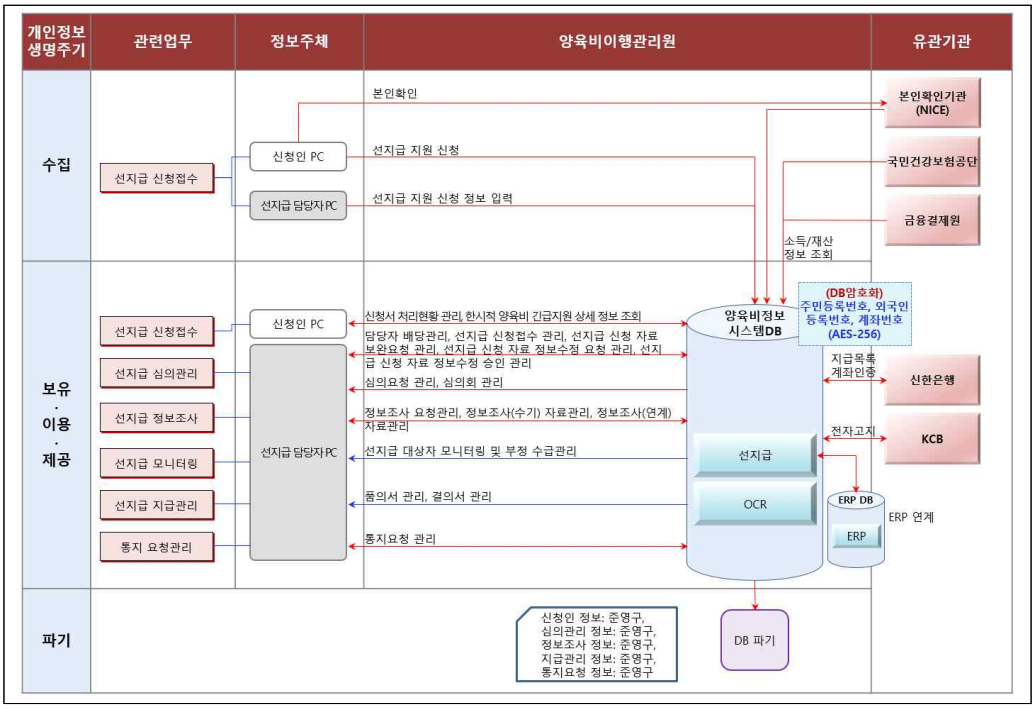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명</td><td colspan="6">양육비이행관리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케이씨에이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5.04.23
~
2025.06.13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 원 미만
☑ 1천만 원 이상 ~ 3천만 원 미만
☐ 3천만 원 이상 ~ 5천만 원 미만
☐ 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
☐ 1억 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양육비정보시스템 선지급 기능개선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
변경 일정</td><td>2025.01 ~ 2025.08</td></tr>
<tr><td>추진 개요
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(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착) 양육비 이행법에 근거한 선지급 기능을 개발하고 행복e음 등 연계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착에 기여
• (국민 만족도 제고) 양육비 선지급 기능개선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
• (업무 효율성 제고) 현행 종이로 관리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함으로써 문서 검색·관리 등 효율성 제고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
성격</td><td>대상
여부</td><td colspan="3">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</td><td rowspan="2">추진
예산</td><td rowspan="2">554,000천원
(부가가치세 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
주체</td><td colspan="3">양육비이행관리원</td></tr>
<tr><td>추진
근거</td><td colspan="3">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td><td>추진
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☑ 변경(고도화)
☐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
유형</td><td colspan="5">해당 없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</td><td>주요 내용</td><td colspan="4">• 양육비 선지급* 신청, 접수, 결정, 조사, 회수 등 업무 단계별 기능 구축 및 통계 데이터 생성 *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, 회수하는 제도
• 효율적·신뢰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상용SW 적용
•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및 정보보안·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</td></tr>
<tr><td>운용 체계 변경 내용 (변경인 경우)</td><td colspan="4">개인정보파일(양육비 선지급 신청정보)의 운용 체계 변경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양육비 선지급 신청정보</td><td>약 17,000건</td><td>[필수]
혼인형태(이혼,비혼), 성명, 개명전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, 주소(국내, 해외), 집행권유무, 법정자격(한부모, 차상위, 수급자, 해당없음), 양육비입금계좌(예금주, 계좌번호), 양육비신청인과의관계, 현재가구원수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집행권원확정일, 피신청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, 가족정보(이름, 신청인과의관계, 주민등록번호, 18세미만여부, 동거여부), 제출서류, 상담내역, DI
[선택]
전화번호, 비상연락처(성명, 전화번호, 관계), 미지급양육비총액, 직전3개월지급받은총양육비, 소득금액, 소득분위, 재산, 월평균양육비, 이혼신고일, 피신청인정보(휴대전화, 전화번호, 주소), 가족정보(학력재학여부, 특이사항), 세대주와의관계</td><td>해당 없음</td><td>양육비정보시스템 선지급 기능 운영</td></tr>
</table>

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	1. 개인정보의 수집, 보유·이용, 제공, 위탁, 파기(Life Cycle)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

수집	• 정보주체(양육비 선지급 신청인)로부터 온라인(홈페이지) 또는 오프라인(방문, 우편 등)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정보 수집
보유·이용	• 양육비 선지급 정보조사 • 양육비 선지급 모니터링 • 양육비 선지급 지급관리 • 양육비 선지급 통지 요청 관리
제공	• 제3자 제공은 해당 없음
위탁	• 시스템 구축 개발사, 본인인증 기관, 전자고지 기관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
파기	• '양육비 선지급 신청정보'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'준영구'이며, 보유기간 만료 시 개인정보 삭제

2. 전체 개인정보 흐름도

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 기준 변경 사항 및 사유</td><td>
<table>
<tr><th>평가지표</th><th>변경 사항</th><th>추가/변경/삭제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<td>4.2.4, 5.1.1, 5.1.2, 5.1.3, 5.1.4, 5.1.5, 5.1.6, 5.2.1, 5.2.2, 5.2.3, 5.2.4, 5.2.5, 5.2.6, 5.2.7, 5.3.1, 5.3.2, 5.4.1, 5.4.2, 5.5.1, 5.5.2, 5.5.3, 5.5.4, 5.5.5, 5.5.6, 5.5.7, 5.5.8, 5.5.9, 5.6.1, 5.6.2, 5.6.3, 5.6.4</td><td>지표 삭제</td><td>삭제</td><td>대상시스템과 연관이 없어 평가 제외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 기준</td><td>•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『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4-10호, 2025.10.31.)』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4개 평가영역, 21개 평가분야, 46개 세부분야, 7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>•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보호 계획, 개인정보 침해대응,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, 개인정보보호 조직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
•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, 개인정보파일 관리, 개인정보 처리방침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평가
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은 보유, 이용·제공, 위탁, 파기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, 수집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
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은 접근통제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,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, 물리적 접근방지, 개인정보의 파기,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, 접근권한 관리,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 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
•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평가영역의 6개 평가 분야, 15개 세부 분야, 30개 평가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에서 제외</td></tr>
<tr><td>위험요인에 대한 개선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 조치 방안</td><td>• 법적 지정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•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적절하여야 함
•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는 권한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함
• 카드번호,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화면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·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보호조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
•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외 접속 가능 시간 제한, 로그인 알림 기능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함</td></tr>
</table>

조치	위험 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 사항	• 민감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가? •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? •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? •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, 법적 근거를 공개 또는 고지하고 있는가? 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, 조회, 변경, 삭제, 출력, 다운로드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말기(업무용 컴퓨터 등), 웹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의 처리화면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유출되지지는 않는가?
평가결과		• 평가 결과 전체 이행률은 93%임 -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8개의 항목을 이행(80%) 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10%)하고 있고, 1개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평가(이행률 94%) -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6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을 모두 적절하게 이행(이행률 100%) -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25개 평가항목 중 10개의 항목을 이행(40%) 하고 있으며, 4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16%)하고 있고, 11개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평가(이행률 86%) -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35개 평가항목 중 29개의 항목을 이행(83%) 하고 있으며, 3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9%)하고 있고, 3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평가(이행률 95%) 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평가영역의 6개 평가 분야, 15개 세부분야, 30개 평가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에서 제외